

# '11년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안내

1. 신청자격 : 건설업등록(종합·전문·설비공사업)업자로서 시공 건설현장 보유자
2. 접수기간 : 2011년 1월 6일(목)부터 쿼터 인원 소진 시 까지
3. 접수방법 및 신청서류
  - 가.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(「붙임1」참조)
  - 나. 전화상담(02-3485-8453~6) 후 공문 및 신청서류 전체 팩스(02-516-7258)로 송부
4. 선발절차 :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처리 절차(「붙임2」참조)
5. 고용허용인원 : 건설업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(「붙임3」참조)
6. 선발방법 : **서류선발** (직접선발 중단)
7. 도입대상국가 : **베트남, 태국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** 등 고용허가제 MOU 체결 국가  
※ 국가 선정시 유선 통화후 선정(유효인력 확인 후 신청가능)
8.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처리 순서 : **각종 신청서류는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**  
※ 보완사항 발생 시 서류보완 완료 시점으로 **순위가 조정되오니** 최초 신청서류 작성·제출 시 보완서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
9. 주의사항
  - 가. 내국인 구인신청 후 **구인노력기간(14일)** 경과 후 고용허가신청서류 제출
  - 나. 고용업무 **대행수수료** 및 **환불기준 확인**
    -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cak.or.kr/foreign>) 공지사항 게시판
    - 공지사항 210번 글 : 업무대행계약서 및 관련서류
    - 공지사항 209번 글 : 환불기준 관련사항

# 고용허가신청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## 1. 내국인 구인신청 관련

-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/>)에 구인신청을 한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인증 요청
-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한 시일부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후 부터 14일 이후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가능

## 2.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관련

- 주된 사업장은 본사로 기재, 고용허가 신청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게 될 공사현장을 기재
- 주된 사업장 및 고용허가 신청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
- 모집인원 또는 부족인원은 허용인원(붙임3 참조) 내에서 외국인력현황표에 기재된 외국인력 총계 인원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가능 ※ 예) 허용인원(100명) - 외국인력 총계(20명) = 모집인원 또는 부족인원 한도(80명)
- 근로조건에 임금 및 지급방법에 수습기간 중 임금 부분에 수습기간 활용여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수습기간 중 임금은 기본급의 90%를 지급가능(최대 3개월)
- 숙식제공 여부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부담일 경우 실비용을 기재(반드시 정확하게 기재)

## 3. 원·하도급계약서

- 원도급계약서 제출 시 반드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기재된 최초계약서, 최종계약서 제출
- 원도급사가 여러 개일 경우 지분율(%)이 표시된 원도급계약서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
- 원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의 준공기한을 확인  
(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)  
※ 모든 계약서는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어야 함  
(전자계약서: 해당 문서의 전체를 송부 / 서면계약서: 해당 문서의 전체를 송부, 계약당사자 간의 직인 필수  
모든 계약서에는 원본대조필 직인 필수)

## 4.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현황표 작성관련

- 원도급사가 신청현장에서 근무 중인 총 외국인근로자수를 파악한 후 기재
- 원도급사가 계약한 타 하도급사가 있을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타 하도급사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
- 하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가 여러 개일 경우 외국인력현황표도 원도급사 전체가 외국인근로자수를 파악해 기재

## 5. 국가선정시 주의사항

- 신청시기부터 입국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함  
※ 10년도 기준 베트남이 약 3개월 소요되며 국가선정 시 반드시 전화상담 후에 선정

※ 해당 서류들은 고용허용인원 산출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처리 절차

① 내국인구인신청 (건설업체 ↔ 관할고용지원센터워크넷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할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(<a href="http://www.work.go.kr">http://www.work.go.kr</a>)에 구인신청</li> <li>내국인 구인노력기간 14일</li> </ul>
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(건설업체 ↔ 건설협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국인구인노력 14일 경과후 신청공문, 업무대행계약서 및 관련서류 일체 팩스송부(03030-516-7258)</li> <li>대행신청 서류는 하단부분 참조</li> </ul>
③ 외국인근로자 알선 및 선정 (고용지원센터 ↔ 건설협회·건설업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업체(사용자)의 구인조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알선</li> <li>건설업체는 알선된 외국인근로자 중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</li> </ul>
④ 고용허가서 발급 (고용지원센터 → 건설협회·건설업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체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</li> </ul>
⑤ 근로계약서 전송 (공단본부 → 송출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근로자에게 건설업체의 근로계약서를 EPS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송출기관에 전송</li> </ul>
⑥ 근로계약 체결 및 결과통보 (구직자 ↔ 송출기관 ↔ 공단본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지 송출기관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</li> <li>현지 송출기관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의사를 공단본부에 통보 (EPS전산시스템)</li> </ul>
⑦ 근로계약 체결 결과 안내 (건설협회 → 건설업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행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건설업체에게 안내</li> </ul>
⑧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(건설협회 ↔ 출입국사무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행기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</li> <li>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EPS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</li> </ul>
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결과 통보 (건설협회 → 공단본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PS전산시스템을 통해 송부</li> </ul>
⑩ 비자 신청 등 입국준비 (송출기관 ↔ 재외공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지 송출기관은 공단본부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확인</li> <li>재외공관에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 신청 등 입국 준비 진행</li> </ul>
⑪ 입국일 지정 및 입국 (공단본부 ↔ 건설협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단본부의 입국계획에 따라 근로자 입국 진행</li> </ul>
⑫ 취업교육 및 건설업체에게 인계 (건설협회 → 건설업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항에서 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 이동</li> <li>2박3일 동안 취업교육(20시간) 수료 후 건설업체에게 인계</li> </ul>

▶ 대행신청 제출서류(팩스전송 : 02-516-7258)

- ⑥ 공문(제목 : 고용업무대행신청, 수신 : 대한건설협회장, 참조 : 외국인력지원팀장)
- ① 업무대행계약서(첨부서식)
-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(첨부서식)
- ③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(※ 원본대조필 직인)
- ④ 원·하도급 계약서 사본(원·하도급계약서 -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기재된 최초계약서 및 최종계약서, - 공동도급시 지분율(%)이 기재된 원·하도급계약서 혹은 공동수급협정서 하도급계약서 - 원사업자, 수급사업자 명이 기재된 계약서, 잔여 공사기간 6개월 이상 ※ 모든 계약관련 서류에 원본대조필 직인)
- ⑤ 외국인력현황표(첨부서식)(신청현장에 대한 원·하도급사 보유 총 외국인근로자수 기재 및 날인, ※ 원본대조필 직인)
- ⑥ 하수급인 확인서(하수급인용)(현장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발급, ※ 원본대조필 직인)

# 건설업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

(근거: 외국인력정책위원회 '10.12.24)

□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('10년과 동일)

연평균 공사금액	외국인 고용 상한 인원
15억원 미만	5명(계수 미적용)
15억원 이상	공사금액 × 0.4 ※ 1억원 당 04명 고용

- \* 연평균공사금액 : 총공사금액 × {12/총공사기간(월)}
- \*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
- \*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

예시1) 원도급공사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'11.1.1 ~ '11.12.31(12개월)인 경우

- 연평균공사 금액 : 50억원 × 12/12 = 50억원
-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: 50억원 × 0.4(1억원당) = 20명

예시2) 총공사금액이 3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'11.1.1 ~ '12.12.31(24개월)인 경우

- 연평균공사 금액 : 300억원 × 12/24 = 150억원
-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: 150억원 × 0.4(1억원당) = 60명
- 공동도급(원도급)지분율이 A사 40%, B사 30%, C사 30%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60명의 30% = 18명

예시3)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'11.1.1 ~ '12.12.31(24개월)인 경우

- 연평균공사 금액 : 100억원 × 12/24 = 50억원
-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: 50억원 × 0.4(1억원당) = 20명
- 공동도급(원도급)지분율이 A사 40%, B사 30%, C사 30%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20명의 30% = 6명